#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41 발의연월일: 2022. 9. 1.

발 의 자:한정애·김승남·김영진

양향자 · 오영환 · 윤미향

이원욱 · 장철민 · 전해철

최기상 · 홍영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 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시설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 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62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62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지정되고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법률 제1862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62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관광진흥법」 제2조제6 <신 설> 호 및 제7호에 따라 지정되고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 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③ 제1항 및 제2항에-----